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중

1. 의결주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원활한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공간계획 수립, 그린바이오 육성, 동물 보호·복지 기능 강화, 청년농업인 육성 및 데이터 기반 축산유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4급 또는 5급 4명, 5급 8명, 6급 8명)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축산 항생제 내성 관리, 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인천공항 고위험 병해충 정밀검역, 비료 품질검사·유통관리 및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1명(6급3, 7급8, 8급4, 연구관2, 연구사4)을 증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에 한시조직(한시정원 4급1, 5급1 포함)으로 설치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고, 인수공통감염병 공동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 중인 한시정원(협업정원) 연구관 1명의 존속기관을 연장하고 연구사 1명을 감축하며, 조직관리의 책임성 증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설되는 동물복지환경 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지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력 5명(5급1, 6급2, 7급1, 관리운영1)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소속기관 인력 25명(6급6, 7급9, 8급7, 9급2, 관리운영1) 등 총 30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조직개편 주요 내용

차관보 폐지, 보조·보좌기관 신설, 명칭변경 및 기능조정 등으로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도모

가. 차관보 폐지에 따른 보조기관 신설(차관보 → 농업혁신정책실)

나. 식품산업정책실 명칭변경 및 기능조정(식품산업정책실 → 식량정책실)

다. 제4조(하부조직) 내 국명 누락에 따른 방역정책국 추가

라. 국제협력국, 축산정책국 및 농업정책국 폐지 및 기능 이관

* 국제협력국 → 기획조정실(국제협력관), 축산정책국 → 식량정책실(축산정책관),
농업정책국 → 농업혁신정책실(농업정책관) 및 식량정책실(식량정책관)

마. 공공데이터 기능 이관(기획조정실 → 농업혁신정책실)

사. 소속기관 고위나 직위를 본부로 이체하여 정책관 1명(동물복지환경
정책관)을 신설하고 농촌정책국장 소관에 둬

* 소속기관에는 본부의 3급 또는 4급을 이체

아. 동물복지 및 수의료 관련업무를 농촌정책국으로 이관하고 기능조정 및
기능신설(명확화)

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고위나’의 본부 이체에 따른 직급조정

* 영남지역본부장 : 고위공무원단(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 → 3급 또는 4급

차. 본부 3급 또는 4급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이체에 따른 정원
조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1. 00. ~ 1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차관보 1명”을 “운영지원과·농촌정책국·농업혁신정책실·방역정책국 및 식량정책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2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을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국제기구의 농업 관련 업무와 국내정책과의 연계방안 추진
16. 국가 간의 농업통상 및 기술협력의 종합·조정
17. 농업환경관련 국제협력의 추진
18. 해외농업 투자 및 개발 관련 정책
19. 세계무역기구관련 농업분야 협상추진 및 농업분야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
20. 동·식물검역과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21. 국외 농업통상 정보의 수집 및 농업환경조사 업무의 종합·조정
22. 농산물 시장접근 물량의 수입관리 및 관세제도 운용의 종합·조정
23. 농업협상 관련 국민적 공감대형성 추진에 관한 사항
24. 남·북간 농산물 반·출입 업무의 종합 및 조정
25. 자유무역협정 농업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26. 수출입 동물·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
27. 식물검역업무에 관한 사항
28.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중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를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로 하고,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에 제26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동물 보호 및 복지제도 운영
27.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수의사법」 운영에 관한 사항
29. 수의사 면허, 수의인력 수급 및 수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제목 “(농업정책국)”을 “(농업혁신정책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업혁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제12조제2항 중 “국장”을 “실장”으로, “1명”을 “3명”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장”을 “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부터 제35호까지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의2를 제2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같은 항 제33호부터 제4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업생명분야 정책 기획 및 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식품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사업에 관한 사항
3. 종자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농식품 생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운영
6. 농업기계화계획의 수립 및 지원
7. 비료의 수급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8. 농약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9. 농림식품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10.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33. 식품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사항
34. 외식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5. 식재료 가공산업 육성 및 식재료 유통 개선에 관한 사항
36. 한식(韓食)의 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37. 식품산업 집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8. 식품 제조·가공산업 및 유통업 등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9. 농업인의 식품가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0. 전통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1. 식품명인제도에 관한 사항
42. 농산물 및 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촉진에 관한 사항
43. 농업 생산자와 식품업체간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44.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산업표준인증에 관한 사항
45. 설탕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6. 농림 분야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축산정책국)”을 “(식량정책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식량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21호부터 제3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장”을 “실장”으로 한다.

1. 식량정책 및 식량수급계획의 수립·조정
2. 양곡의 매입·공급 및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운용
4. 식량 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교류
5. 쌀 목표가격의 설정 및 변경
6. 쌀 전업농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농작물의 병해충 예방 및 방제계획의 수립·조정
8. 농촌용수의 개발·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가뭄해 및 수해 대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10.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 등의 조성·관리
12. 개간·간척 등 농업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1. 농산물 유통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및 운영
22. 소비지 및 산지 농산물 유통시설의 개선
23. 농산물 도매시장·공판장 및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영
24.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
25. 농산물의 수급 및 비축사업의 종합 관리
26. 농업의 관측, 농산물 유통의 정보화 및 유통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27. 농산물 및 식품 가격안정대책의 종합·조정
28.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 표준화에 관한 사항
29.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30. 농산물 및 식품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사항
31.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식생활 교육 및 식문화 보급에 관한 사항
32.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농산물 우수관리·원산지표시 및 이력추적 등
농산물 품질 관련 제도의 운영
33. 유기(有機)가공식품 인증에 관한 사항
34. 우수 원예브랜드 육성·지원
35. 원예·특용작물의 생산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6. 원예·특용작물의 경쟁력 향상 및 재해대책 추진
37. 원예·특용작물의 자조금(自助金)제도 운영 및 소득안정 지원
38.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질병·품질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4조의2를 제13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4조의2)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5.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의 운영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중 “인천공항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및 영남지역본부의 지

역본부장”을 “인천공항지역본부장”으로, “중부지역본부장”를 “영남지역
본부장 및 중부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후단 중 “44명을”을 “43명을”로 한다.

제39조제2항 후단 중 “51명을”을 “52명을”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45조제3항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를 “1명(연구관)”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 정원 30명(3급 또는 4급 이하 3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
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
으로 본다.

[별표 2]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
(제38조제1항 관련)

총 계	636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2
고위공무원단	1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1
일반직 계	632
고위공무원단	1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
3급 또는 4급 이하	612
전문경력관	3

[별표 3]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제39조제1항 관련)

총계	2,685
일반직 계	2,685
고위공무원단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3
3급 또는 4급 이하	2,640
전문경력관	37
임기제(교수요원)	1

[별표 4]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제41조제1항 관련)

1.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정원
정책관 등 1개 과	3명
농촌정책국 1개 정책관등	0명

2.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조직	정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개 과	4명

[별표 5]

농림축산식품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42조제5항 관련)

1.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4급 이하	3

[별표 6]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
(제45조 관련)

1. 제45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3
일반직 계	3
4급 또는 5급 이하	3

2. 제45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1

3. 제45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연구관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하부조직) ① 농림축산식품 부에 <u>차관보 1명</u> 을 둔다.	제4조(하부조직) ① ----- --- <u>운영지원과 · 농촌정책국 · 농업혁신정책실 · 방역정책국 및 식량정책실</u> ---.
② <u>농림축산식품부에 운영지원 과 · 농촌정책국 · 농업정책국 · 국제협력국 · 축산정책국 및 식 품산업정책실을 둔다.</u>	<u><삭 제></u>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조(차관보) ① <u>차관보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으로 보한다.</u>	<u><삭 제></u>
② <u>차관보는 장관이 명하는 업 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 좌한다.</u>	
제8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 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 ·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 관등”이라 한다) <u>2명</u> 을 둔다.	제8조(기획조정실장) ① ----- ----- ----- ----- ----- ----- <u>3명</u> -----.
② <u>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u>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1명은 고	②----- -- <u>2명</u> ----- -----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 13. (생략)

13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
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
항

13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

③ -----
-----.

1. ~ 13.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14. (현행과 같음)

15. 국제기구의 농업 관련 업무
와 국내정책과의 연계방안 추
진

16. 국가 간의 농업통상 및 기술
협력의 종합·조정

17. 농업환경관련 국제협력의
추진

18. 해외농업 투자 및 개발 관련
정책

19. 세계무역기구관련 농업분야
협상추진 및 농업분야 협상결
과의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

20. 동·식물검역과 세계무역기
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
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15. ~ 17. (생 략) 제11조(농촌정책국) ① 농촌정책 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u><신 설></u>	<u>관한 업무의 종합·조정</u> 21. <u>국외 농업통상 정보의 수집 및 농업환경조사 업무의 종합 · 조정</u> 22. <u>농산물 시장접근 물량의 수 입관리 및 관세제도 운용의 종합·조정</u> 23. <u>농업협상 관련 국민적 공감 대형성 추진에 관한 사항</u> 24. <u>남·북간 농산물 반·출입 업무의 종합 및 조정</u> 25. <u>자유무역협정 농업분야 협 상에 관한 사항</u> 26. <u>수출입 동물·축산물의 검 역에 관한 사항</u> 27. <u>식물검역업무에 관한 사항</u> 28. <u>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 물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u> 29. ~ 31. (현행 제15호부터 제 17호까지와 같음) 제11조(농촌정책국) ① ----- ----- 국장 밑 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5. (생 략)

<신 설>

<신 설>

제12조(농업정책국) ① 농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원으로 보한다.

③ -----
--.

1. ~ 25. (현행과 같음)

26. 동물 보호 및 복지제도 운영

27.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수의사법」 운영에 관한 사
항

29. 수의사 면허, 수의인력 수급
및 수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제12조(농업혁신정책실) ① 농업혁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 3명-----
-----.

③ 실장-----
--.

1. 농업생명분야 정책 기획 및
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식품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사업에 관한 사항

3. 종자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
한 사항

<u><신 설></u>	<u>4. 농식품 생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5.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운영</u>
<u><신 설></u>	<u>6. 농업기계화계획의 수립 및 지원</u>
<u><신 설></u>	<u>7. 비료의 수급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8. 농약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9. 농림식품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u>
<u><신 설></u>	<u>10.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1.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2.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u>
<u>1. ~ 10. (생 략)</u>	<u>13. ~ 22. (현행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u>
<u>10의2. (생략)</u>	<u>23.(현행 제10의2호와 같음)</u>
<u>11. ~ 15. (생 략)</u>	<u>24. ~ 28. (현행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u>
<u>17. ~ 20. (생 략)</u>	<u>29. ~ 32. (현행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와 같음)</u>
<u>21. 식량정책 및 식량수급계획의 수립·조정</u>	<u><삭 제></u>

22. <u>양곡의 매입·공급 및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u>	<u><삭 제></u>
23. <u>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 증권정리기금의 운용</u>	<u><삭 제></u>
24. <u>식량 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 교류</u>	<u><삭 제></u>
25. <u>쌀 목표가격의 설정 및 변경</u>	<u><삭 제></u>
26. <u>쌀 전업농의 육성에 관한 사항</u>	<u><삭 제></u>
30. <u>농작물의 병해충 예방 및 방 제계획의 수립·조정</u>	<u><삭 제></u>
31. <u>농촌용수의 개발·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삭 제></u>
32. <u>가뭄해 및 수해 대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u>	<u><삭 제></u>
33. <u>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u>	<u><삭 제></u>
34. 「 <u>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u> 」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 등의 조성·관리	<u><삭 제></u>
35. <u>개간·간척 등 농업개발사업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신 설></u>	33. <u>식품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사항</u>
<u><신 설></u>	34. <u>외식산업의 육성·지원에</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관한 사항

35. 식재료 가공산업 육성 및 식
재료 유통 개선에 관한 사항

36. 한식(韓食)의 보급 및 세계
화에 관한 사항

37. 식품산업 집적 활성화에 관
한 사항

38. 식품 제조·가공산업 및 유
통업 등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9. 농업인의 식품가공 활성화
에 관한 사항

40. 전통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사항

41. 식품명인제도에 관한 사항

42. 농산물 및 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촉진에 관한 사
항

43. 농업 생산자와 식품업계간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44.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산업
표준인증에 관한 사항

45. 설탕산업 육성·지원에 관
한 사항

46. 농림 분야 바이오산업의 육
성에 관한 사항

제13조(국제협력국) ① 국제협력

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국제기구의 농업 관련 업무
와 국내정책과의 연계방안 추
진

2. 국가 간의 농업통상 및 기술
협력의 종합·조정

3. 농업환경관련 국제협력의 추
진

4. 해외농업 투자 및 개발 관련
정책

5. 세계무역기구관련 농업분야
협상추진 및 농업분야 협상결
과의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

6. 동·식물검역과 세계무역기
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
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7. 국외 농업통상 정보의 수집
및 농업환경조사 업무의 종합
· 조정

8. 농산물 시장접근 물량의 수

<삭 제>

입관리 및 관세제도 운용의
종합·조정

9. 농업협상 관련 국민적 공감
대형성 추진에 관한 사항

10. 남·북간 농산물 반·출입
업무의 종합 및 조정

11. 자유무역협정 농업분야 협
상에 관한 사항

12. 수출입 동물·축산물의 검
역에 관한 사항

13. 식물검역업무에 관한 사항

14.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
물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축산정책국) ① 축산정책
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 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신 설>

제14조(식량정책실) ① 식량정책
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
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 1명은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
--.

1. 식량정책 및 식량수급계획의
수립·조정

<u><신 설></u>	<u>2. 양곡의 매입·공급 및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3.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운용</u>
<u><신 설></u>	<u>4. 식량 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 교류</u>
<u><신 설></u>	<u>5. 쌀 목표가격의 설정 및 변경</u>
<u><신 설></u>	<u>6. 쌀 전업농의 육성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7. 농작물의 병해충 예방 및 방제계획의 수립·조정</u>
<u><신 설></u>	<u>8. 농촌용수의 개발·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9. 가뭄해 및 수해 대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u>
<u><신 설></u>	<u>10.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 등의 조성·관리</u>
<u><신 설></u>	<u>12. 개간·간척 등 농업개발사업에 관한 사항</u>
<u>1. ~ 8. (생 략)</u>	<u>13. ~ 20. (현행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u>
<u><신 설></u>	<u>21. 농산물 유통 관련 법령·제</u>

	<u>도의 정비 및 운영</u>
<u><신 설></u>	<u>22. 소비지 및 산지 농산물 유통 시설의 개선</u>
<u><신 설></u>	<u>23. 농산물 도매시장·공판장 및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영</u>
<u><신 설></u>	<u>24.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u>
<u><신 설></u>	<u>25. 농산물의 수급 및 비축사업의 종합 관리</u>
<u><신 설></u>	<u>26. 농업의 관측, 농산물 유통의 정보화 및 유통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27. 농산물 및 식품 가격안정대책의 종합·조정</u>
<u><신 설></u>	<u>28.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 표준화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29.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u>
<u><신 설></u>	<u>30. 농산물 및 식품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31.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식생활 교육 및 식문화 보급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32.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농산물 우수관리·원산지표시 및</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이력추적 등 농산물 품질 관련 제도의 운영</u> 33. <u>유기(有機)가공식품 인증에 관한 사항</u> 34. <u>우수 원예브랜드 육성·지원</u> 35. <u>원예·특용작물의 생산 및 수급에 관한 사항</u> 36. <u>원예·특용작물의 경쟁력 향상 및 재해대책 추진</u> 37. <u>원예·특용작물의 자조금(自助金)제도 운영 및 소득안정 지원</u> 38. <u>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질병·품질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항</u>
<u>제14조의2(방역정책국) ① (생략)</u>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수의사법」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의 운영 6. (생략) 7. <u>수의사 면허, 수의인력 수급 및 수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u>	<u>제13조(방역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u>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의 운영 6. (현행과 같음) <u><삭 제></u>

8.·9. (생 략)

제15조(식품산업정책실) ① 식품

산업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
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식품산업의 육성·진흥에 관
한 사항

2. 외식산업의 육성·지원에 관
한 사항

3. 식재료 가공산업 육성 및 식
재료 유통 개선에 관한 사항

4. 한식(韓食)의 보급 및 세계화
에 관한 사항

5. 식품산업 집적 활성화에 관
한 사항

6. 식품 제조·가공산업 및 유
통업 등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7. 농업인의 식품가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전통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8.·9. (현행과 같음)

<삭 제>

에 관한 사항

9. 식품명인제도에 관한 사항

10. 농산물 및 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촉진에 관한 사
항

11. 농업 생산자와 식품업체간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12.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산업

표준인증에 관한 사항

13. 설탕산업 육성·지원에 관

한 사항

14. 농산물 유통 관련 법령·제

도의 정비 및 운영

15. 소비지 및 산지 농산물 유통

시설의 개선

16. 농산물 도매시장·공판장

및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
영

17.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

18. 농산물의 수급 및 비축사업

의 종합 관리

19. 농업의 관측, 농산물 유통의

정보화 및 유통 종사자의 교
육에 관한 사항

20. 농산물 및 식품 가격안정대

책의 종합·조정

- 21.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
류 표준화에 관한 사항
- 22.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소
비자 보호 및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 23. 농산물 및 식품의 지리적 표
시에 관한 사항
- 24.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
른 식생활 교육 및 식문화 보
급에 관한 사항
- 25.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농산
물 우수관리·원산지표시 및
이력추적 등 농산물 품질 관
련 제도의 운영
- 26. 유기(有機)가공식품 인증에
관한 사항
- 27. 삭제
- 28. 우수 원예브랜드 육성·지
원
- 29. 원예·특용작물의 생산 및
수급에 관한 사항
- 30. 원예·특용작물의 경쟁력
향상 및 재해대책 추진
- 31. 원예·특용작물의 자조금
(自助金)제도 운영 및 소득안
정 지원

- 32.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질병·품질관리 및 검
사에 관한 사항
- 33. 농업생명분야 정책 기획 및
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 34. 삭제
- 35. 삭제
- 36. 농식품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사업에 관한 사항
- 37. 삭제
- 38.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39. 농림식품과학기술정책의 수
립 및 종합·조정
- 40. 농림 분야 바이오산업의 육
성에 관한 사항
- 41. 종자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
한 사항
- 42. 농식품 생명산업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사항
- 43.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운영
- 44. 삭제
- 45. 삭제
- 46. 농업기계화계획의 수립 및
지원
- 47. 비료의 수급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48. 농약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에 관한 사항

49. 동물 보호 및 복지제도 운영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23조(지역본부) ① (생 략)

② 지역본부에 지역본부장 1명을 두며, 인천공항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및 영남지역본부의 지역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중부지역본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밖의 지역본부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④ (생 략)

제38조(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4

제23조(지역본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인천공항지역본부장-----

----- 영남지역본부장 및 중부 지역본부장-----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8조(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43

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frac{1}{3}$ 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frac{1}{3}$ 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략)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
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
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
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
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
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
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
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
다.

명을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52명 을

③ (생략)

제43조(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①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를 둔다.

②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에 과장 1명을 둔다.

③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

A) 농업분야 협상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

A) 농업분야 상품양허 협상에 관한 사항

3.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

A) 동식물 위생·검역, 농업 분야 원산지 및 무역구제 등 그 밖의 협상분야에 관한 사항

4.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

A) 농업분야 국내외 동향 파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u>악 및 홍보에 관한 사항</u> <u>5.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u> <u>A) 농업분야 합의사항 이행</u> <u>및 점검에 관한 사항</u> <u>⑤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에</u> <u>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u> <u>같다.</u> <u>⑥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농</u> <u>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제45조(한시정원) ①·② (생략) ③ 인수공통감염병 공동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2</u> <u>년 12월 31일까지</u> 별표 6에 따 른 한시정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두며, 별표 6의 정 원 <u>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u> 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 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45조(한시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2023</u> <u>년 12월 31일</u>----- ----- ----- -- <u>1명(연구관)</u> ----- ----- ----- ----- ----- -----.
--	--

신 · 구정원대비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621</u>		<u>636</u>	+15	
	.		.		.		
	.		.		.		
일반직 계			<u>617</u>		<u>632</u>	+15	
고위공무원단			<u>13</u>		<u>14</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598</u>		<u>612</u>	+14	
	.		.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3]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2,689</u>	<u>2,685</u>	-4
일반직 계	<u>2,689</u>	<u>2,685</u>	-4
고위공무원단	<u>5</u>	<u>4</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643</u>	<u>2,640</u>	-3
·	·	·	
·	·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5]

농림축산식품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5항 및 제43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2. <u>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존속기</u> <u>한: 2022년 12월 31일)</u>	2. <u>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존속기</u> <u>한: 2022년 12월 31일)</u>	<삭 제>	-2.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존속기 한: 2022년 12월 31일)
<u>총계</u>	<u>2</u>	<삭 제>	-2
<u>일반직 계</u>	<u>2</u>	<삭 제>	-2
<u>4급 이하</u>	<u>2</u>	<삭 제>	-2

[별표 6]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5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3. 제45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u>3. 제45조</u> <u>제3항 관</u> <u>련 한시정</u> <u>원(존속기</u> <u>한: 2022</u> <u>년 12월 3</u> <u>1일)</u>	<u>3. 제45조</u> <u>제3항 관</u> <u>련 한시</u> <u>정원(존</u> <u>속기한: 2</u> <u>023년 12</u> <u>월 31일)</u>	
총계	<u>2</u>	<u>1</u>	-1
일반직 계	<u>2</u>	<u>1</u>	-1
·	·	·	
<u>연구사</u>	<u>1</u>	<u><삭 제></u>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6